

대학 직제규정

2012. 09. 01. 최초제정	2017. 09. 13. 부분개정	2022. 03. 01. 부분개정	2025. 02. 01. 부분개정
2012. 12. 01. 부분개정	2018. 02. 01. 부분개정	2022. 07. 01. 부분개정	2025. 03. 01. 부분개정
2013. 03. 01. 부분개정	2018. 04. 01. 부분개정	2022. 08. 01. 부분개정	2025. 03. 17. 부분개정
2013. 05. 01. 부분개정	2018. 07. 01. 부분개정	2023. 01. 01. 부분개정	2025. 04. 01. 부분개정
2013. 09. 01. 부분개정	2019. 03. 01. 부분개정	2023. 03. 01. 부분개정	2025. 04. 11. 부분개정
2014. 03. 01. 부분개정	2019. 04. 01. 부분개정	2023. 06. 01. 부분개정	2025. 06. 01. 부분개정
2014. 07. 01. 부분개정	2019. 06. 17. 부분개정	2023. 07. 01. 부분개정	2025. 08. 01. 부분개정
2014. 10. 01. 부분개정	2019. 08. 15. 부분개정	2023. 08. 01. 부분개정	2025. 10. 20. 부분개정
2015. 06. 01. 부분개정	2019. 10. 01. 부분개정	2023. 09. 01. 부분개정	2025. 12. 15. 부분개정
2015. 12. 15. 부분개정	2019. 10. 15. 부분개정	2024. 02. 01. 부분개정	2026. 03. 13. 부분개정
2016. 01. 01. 부분개정	2020. 02. 27. 부분개정	2024. 04. 01. 부분개정	2026. 04. 01. 부분개정
2016. 03. 01. 부분개정	2020. 06. 01. 부분개정	2024. 05. 01. 부분개정	2026. 05. 01. 부분개정
2016. 07. 01. 부분개정	2020. 08. 07. 부분개정	2024. 07. 01. 부분개정	2026. 06. 08. 부분개정
2016. 10. 01. 부분개정	2020. 09. 01. 부분개정	2024. 09. 01. 부분개정	2026. 06. 22. 부분개정
2016. 12. 01. 부분개정	2021. 06. 01. 부분개정	2024. 10. 17. 부분개정	
2017. 02. 01. 부분개정	2021. 08. 01. 부분개정	2024. 11. 08. 부분개정	
2017. 04. 01. 부분개정	2021. 10. 01. 부분개정	2025. 01. 01. 부분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교법인 청운학원 정관 제7장 제2절 및 대전보건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2장에 따라 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학의 직제는 법령, 정관 및 학칙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기구) 대학의 기구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무분장) 이 규정에서 정한 각 조직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

제5조(교원 및 직원) 대학에는 다음과 같이 교원과 직원을 둔다.

1.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하며, 필요에 따라 초빙교원, 겸임교원, 강의전담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강사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21.06.01.>
2. 직원은 일반행정직렬, 행정실무직렬, 일반기술직렬, 기술실무직렬로 구분하며, 필요에 따라 계약직, 임시직 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정원) 교원의 정원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에 의하고, 직원은 정관 제92조의 [별표 2]와 같다.

제2장 총장·부총장

제7조(총장) ①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본 대학을 대표한다.

제8조(부총장) ①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 유고 시 그 업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5.12.15.>

②대학에 1명 이상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부총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 또는 계약직 중에서 보한다.<개정 2025.01.01.>

③부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4.10.01.>

제9조(총장보좌기구) ①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속실을 둔다.<개정 2015.12.15.>

②삭제 <2015.12.15.>

③삭제 <2015.12.15.>

제9조의2(청렴감사실) ①대학의 총장직속기구로 청렴감사실을 두며, 청렴감사실에는 실장을 둔다.

②청렴감사실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보수 및 수당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1.08.01.>,<개정 2024.05.01.>

제9조의3(헬스케어혁신원) ①사단법인 한달빛글로벌보건연합대학 설립에 따라 대학의 총장직속기구로 헬스케어혁신원을 둔다. 헬스케어혁신원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본 대학소속 교원으로 겸보한다.

②헬스케어혁신원에 원장을 보좌하기 위한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원장은 본 대학소속 교원으로 겸보한다.

③헬스케어혁신원에는 헬스케어혁신운영팀을 두며, 팀장은 본 대학 소속 교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26.03.13.>

[본조신설 2025.12.15.]

제9조의4(AI·DX사업추진단) ①대학의 AI·DX사업추진단에는 단장을 두며, 전임교원으로 겸보하거나 6급 이상의 직원으로 한다.<개정 2026.06.08.>

②AI·DX사업추진단에는 AI·DX교육지원센터를 두며 센터장은 본 대학 소속 교직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6.04.01.]

제3장 대학본부

제10조(대학본부) ①대학의 본부에는 기획처, 교무처, 학생·취업처, 입학처, 사무처를 둔다.<개정 2015.12.15., 2016.01.01., 2017.04.01., 2019.08.15., 2020.08.07., 2024.02.01., 2024.09.01., 2024.10.17.>

②각 부서에는 처장을 두며,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취업처장, 입학처장, 사무처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하거나 6급 이상의 직원으로 한다.<개정 2014.10.01., 2015.12.15., 2016.01.01., 2016.10.01., 2017.04.01., 2019.08.15., 2020.08.07., 2021.06.01., 2024.02.01., 2024.09.01., 2024.10.17., 2026.06.08.>

③각 부서에는 팀과 센터를 둘 수 있으며, 팀/센터장은 본 대학 소속 교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5.12.15., 2016.10.01., 2026.03.13.>

제10조의2 삭제 <2024.10.17.>

제11조(기획처) 기획처에는 기획팀, 대학성과·IR센터, 대학정보관리팀, 지역사회협력센터를 둔다.<개정 2015.12.15., 2016.01.01., 2016.12.01., 2017.04.01., 2018.07.01., 2020.08.07.,

2021.10.01., 2024.02.01., 2024.09.01., 2024.10.17., 2025.08.01.>

제12조(교무처) 교무처에는 교무팀, 학사학위센터, 직업교육혁신센터, 직업교육콘텐츠연구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둔다.<개정 2015.12.15., 2016.01.01., 2018.07.01., 2019.06.17., 2019.08.01., 2020.02.27., 2020.08.07., 2021.08.01., 2021.10.01., 2022.08.01., 2025.03.01., 2025.06.01.>

제13조(학생·취업처) 학생·취업처에는 학생팀, 취업지원센터, 직업이음센터, 자원봉사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예비군대대를 두며, 학생팀에 건강관리실(보건, 상담)을 둔다.
<개정 2015.12.15., 2016.01.01., 2017.04.01., 2018.07.01., 2019.08.15., 2020.02.27., 2021.08.01., 2021.10.01., 2024.05.01., 2025.08.01., 2025.10.20., 2026.03.13.>

제13조의2(입학처) 입학처에는 입학·홍보팀을 둔다.

<신설 2017.04.01.>,<개정 2021.10.01., 2022.07.01., 2023.03.01., 2024.10.17., 2025.02.01.>

제14조 삭제<2019.08.15.>

제15조(사무처) 사무처에는 총무팀, 관리팀, 기숙사를 둔다.

<개정 2015.12.15., 2021.10.01.>

제15조의2 삭제 <2020.08.07.>

제4장 학과

제16조(학과) 학칙 제5조에 의한 학과에 학과장, 원장을 두며,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단, 학과의 특성에 따라 비전임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24.09.01., 2025.01.01.>

제16조의2(대학) ①대학에는 간호대학을 두며, 학장을 둘 수 있다.<신설 2018.02.01.>,<개정 2018.04.01.>

②간호대학에는 간호학과를 둔다.<신설 2018.02.01.>,<개정 2018.07.01., 2019.06.17.>

제17조(스쿨 및 학부) ①각 스쿨 및 학부는 헬스케어스쿨, 재활치료스쿨, 늘·돌봄스쿨, 보건융합학부, 군사학부, 교양교육원을 두며, 스쿨장, 학부장, 원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8.02.01., 2018.04.01., 2024.07.01., 2025.04.01.>

②헬스케어스쿨에는 간호대학, 임상병리학과, 방사선학과, 치위생학과, 응급구조학과를 두며, 응급구조학과에는 응급구조전공과 응급구조의무부사관전공을 둔다. 간호대학은 제 16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18.04.01., 2020.06.01., 2024.07.01., 2025.04.01., 2026.06.08.>

③재활치료스쿨에는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스포츠건강관리과를 둔다.

<개정 2018.04.01., 2021.06.01., 2024.07.01., 2025.04.01.>

④늘·돌봄스쿨에는 유아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반려동물과, 장례지도과를 둔다.<개정 2018.04.01., 2020.02.27., 2021.06.01., 2022.07.01., 2024.02.01., 2024.07.01., 2025.04.01., 2026.06.08.>

⑤보건융합학부에는 치기공학과, 안경광학과, 보건의료행정학과, HiT자율전공학부, 뷰티케어과, 바이오의약과, AI소프트웨어학과, 환경안전보건학과, 경찰과학수사학과, 재난소방·건설안전과, 호텔조리&제과제빵과를 두며, 스쿨융합선도는 치기공학과, 안경광학과,

보건의료행정학과, 뷰티케어과, 바이오의약과, 경찰과학수사학과로 한다.

<개정 2018.04.01., 2019.03.01., 2024.07.01., 2025.04.01., 2025.06.01., 2026.06.08.>

⑥군사학부에는 국방응급의료과를 둔다.

<개정 2018.04.01., 2019.03.01. 2019.06.17., 2019.10.01., 2021.06.01., 2022.07.01., 2024.02.01., 2024.07.01., 2025.04.01., 2026.06.08.>

⑦삭제<2025.04.01.>

⑧삭제<2024.10.17.>

⑨삭제<2024.07.01.>

⑩삭제<2025.04.01.>

제17조의2(보건전문기술대학원) ①보건전문기술대학원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하거나 6급 이상의 직원으로 한다.<개정 2023.01.01., 2023.03.01., 2025.03.01., 2026.06.08.>

②보건전문기술대학원에는 신기술진단검사, 특수의료장비진단·치료향상, 디지털치위생관리, 스마트재활 헬스케어, 디지털기반 치과보철의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신설 2023.01.01.>,<개정 2025.03.01., 2025.06.01.>

③보건전문기술대학원에는 석사학위센터를 두며, 센터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한다.<신설 2023.01.01.>,<개정 2025.03.01.>

[본조신설 2022.08.01.]

제18조 삭제 <2018.04.01.>

제5장 부속교육기관 삭제 <2018.07.01.>

제19조 삭제 <2018.07.01.>

제20조 삭제 <2018.07.01.>

제21조 삭제 <2016.10.01.>

제21조의2 삭제 <2018.07.01.>

제21조의3 삭제 <2018.07.01.>

제6장 부속기관

제22조(부속기관) 대학의 부속기관에는 학술정보관, 평생교육원, 인권센터를 둔다.<개정 2015.12.15., 2016.01.01. 2018.07.01., 2021.10.01., 2022.03.01., 2025.02.01.>

제23조(학술정보관) ①학술정보관에 학술정보관장을 두며, 전임교원으로 겸보하거나 6급 이상의 직원으로 한다.<개정 2015.12.15., 2016.01.01., 2026.06.08.>

②학술정보관에 도서관(도서관운영팀), 대학기록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본 대학 소속 교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5.12.15., 2016.01.01., 2020.06.01., 2024.05.01., 2026.03.13.>

제23조의2(평생교육원) ①삭제<2025.02.01.>

②평생교육원에는 원장을 두며, 전임교원으로 겸보하거나 6급 이상의 직원으로 한다.<신

설 2018.07.01.>,<개정 2024.09.01., 2026.06.08.>

③평생교육원에는 평생직업교육마이스터센터, 평생교육학사지원팀을 두며, 팀/센터장은 본 대학 소속 교직원으로 보한다.<신설 2018.07.01.>,<개정 2021.10.01., 2025.02.01., 2026.03.13.>

제23조의3 삭제 <2021.10.01.>

제23조의4(인권센터) 인권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을 겸보하거나 외부 전문가로 한다.<신설 2022.03.01.>

제24조 삭제 <2021.10.01.>

제25조 삭제 <2021.10.01.>

제7장 부설연구소 삭제 <2018.07.01.>

제26조 삭제 <2018.07.01.>

제8장 위탁기관 삭제 <2018.07.01.>

제27조 삭제 <2018.07.01.>

제9장 학교기업 삭제 <2024.10.17.>

제28조 삭제 <2024.10.17.>

제10장 대외협력본부<개정 2022.03.01., 2025.02.01.>

제29조(산학협력단) ①산업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특수법인의 산학협력단을 둔다.<신설 2022.03.01.>

②대학의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 전임교원으로 겸보하거나 6급 이상의 직원으로 한다.<개정 2014.10.01., 2026.06.08.>

③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보좌하기 위한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부단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하거나 6급 이상의 직원으로 한다.<개정 2023.03.01., 2026.06.08.>

④산학협력단에는 각 호의 조직을 두며, 팀/센터장/사업단장은 본 대학 소속 교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23.03.01., 2026.03.13.>

1. 산단기획팀
2. 삭제 <2025.06.01.>
3. 삭제 <2025.01.01.>
4. 보건안전교육센터
5. 의료시뮬레이션센터
6. 대학혁신지원사업단

가. 사업운영팀<신설 2023.08.01.>

7. 삭제 <2025.06.01.>

8. 삭제 <2025.06.01.>

9. 삭제 <2025.03.17.>

10. 통합 늘·돌봄 센터<신설 2025.03.17.>

⑤삭제 <2016.12.01.>

⑥삭제 <2023.03.01.>

⑦산학협력단에 위탁기관을 두며, 위탁기관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 관리지원센터와 대전중구체력인증센터를 둘 수 있으며, 위탁기관의 장은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또는 일반직 직원으로 보한다. 단, 겸직이 어려운 위탁기관의 경우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8.07.01.>,<개정 2020.02.27., 2020.06.01., 2024.11.08., 2026.05.01.>

⑧삭제 <2020.08.07.>

제30조 삭제 <2023.03.01.>

제31조 삭제 <2023.03.01.>

제32조(HRD사업단) ①대학의 HRD사업단에는 단장을 두며, 전임교원으로 겸보하거나 6급 이상의 직원으로 한다.<신설 2017.09.13.>,<개정 2026.06.08.>

②HRD사업단에는 교육운영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지원센터를 두며, 팀/센터장은 본 대학 소속 교직원으로 보한다.<신설 2017.09.13.>,<개정 2021.08.01., 2021.10.01., 2024.04.01., 2024.05.01., 2025.06.01., 2026.03.13., 2026.06.22.>

제32조의2(국제교류원) ①대학의 국제교류원에는 원장을 두며, 전임교원으로 겸보하거나 6급 이상의 직원으로 한다.<개정 2026.06.08.>

②국제교류원에는 국제교류센터를 두며, 센터장은 본 대학 소속 교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26.03.13.>

[본조신설 2025.02.01.]

제32조의3(RISE사업단) ①대학의 RISE사업단에는 단장을 두며, 전임교원으로 겸보하거나 6급 이상의 직원으로 한다.<개정 2026.06.08.>

②RISE사업단에는 사업운영팀, 지역기업지원센터(RIS), 창업AI융합지원센터를 두며, 팀/센터장은 본 대학 소속 교직원으로 보한다.<신설 2025.04.01.>,<개정 2025.06.01., 2025.10.20., 2026.03.13.>

[본조신설 2025.03.17.]

제11장 마이스터대운영사업단 삭제 <2025.03.01.>

제33조 삭제 <2025.03.01.>

제12장 글로컬사업본부<신설 2024.10.17.>,<개정 2025.01.01.>

제34조(글로컬사업본부) ①글로컬사업본부에는 글로컬사업단을 둔다.

②글로벌사업본부의 본부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할 수 있다.

[제36조에서 이동<2025.01.01.>]

제35조(글로벌사업단) ①대학의 글로벌사업단에는 단장을 두며, 전임교원으로 겸보하거나 6급 이상의 직원으로 한다.<개정 2026.06.08.>

②글로벌사업단에 단장을 보좌하기 위한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부단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하거나 6급 이상의 직원으로 한다.<신설 2025.02.01.>,<개정 2026.06.08.>

③글로벌사업단에는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두며, 팀/센터장은 본 대학 소속 교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25.02.01., 2026.03.13.>

1. 사업운영팀
2. HiT글로벌특화센터
3. HiT글로벌러닝센터
4. L-라이프산업지원센터<신설 2025.04.11.>
5. IPE센터<신설 2025.06.01.>

[제37조에서 이동<2025.01.01.>]

제13장 보칙<개정 2023.09.01., 2025.01.01., 2025.09.01.>

제36조(위원회) 대학의 주요업무를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5조로 이동<2023.09.01.>, 제34조에서 이동<2025.01.01.>]

제37조(TF팀) 대학의 새로운 업무나 특별한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TF팀 등의 특별팀을 설치할 수 있다.

[제34조에서 이동<2023.09.01.>, 제35조에서 이동<2025.01.0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신설 및 폐지된 기구와 관련 보직의 임면은 이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8조 3항의 경우 규정 개정일 기준 보직자에 대해서는 보직 임명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에 의하여 통합된 의무행정과, 보건의료정보과는 2018학년도 말까지, 방송콘텐츠과, 문화재과는 2017학년도 말까지 종전의 대학 직제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신설 및 폐지된 기구의 보직 임면은 이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기구는 이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7조의 ⑥의 패션컬러·스타일리스트과는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6항은 위탁기관 종료시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7조 제3항 보건 의료 행정(학)과, 제4항 환경안전보건(학)과, 재난소방·건설안전과, 제6항 컴퓨터정보(학)과, 펫토타케어과는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의2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제32조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7조 제4항 경찰과학수사(학)과, 제6항 예술·체육지도과는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7조의2 전문기술석사과정 임상병리학과, 방사선학과는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7조 제4항 메디컬코스메틱과, 의무부사관과(응급구조학전공), 제6항 반려동물과는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7조 1항 및 10항의 HIT자율전공학부 자율전공과 제17조 2항의 임상병리학과, 치기공학과, 치위생학과, 식품영양학과, 안경광학과, 제17조 3항의 방사선학과, 보건의료행정학과, 물리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 작업치료학과 제17조 4항의 환경안전보건학과, 국방응급의료과, 경찰과학수사학과, 제17조 5항의 사회복지학과, 호텔조리&제과제빵과, 제17조 6항의 컴퓨터정보학과, 스포츠건강관리과, 제17조 7항의 유아교육학과는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2024년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한 부분은 이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2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7조의2 제2항의 스마트재활 헬스케어, 디지털기반 치과보철은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9조의3의 헬스케어혁신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 ②(보직 조건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4제1항, 제10조제2항, 제17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제23조의2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32조의2제1항, 제32조의3제1항, 제35조제1항,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 ③(스쿨 및 학부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 제5항 패션컬러·스타일리스트과는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 것으로 보며, 의료경영과, 주얼리디자인과, 방송콘텐츠과, 메디컬코스메틱과, 식품영양학과는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제17조 제2항 응급구조학과(응급구조전공, 응급구조의무부사관전공), 제4항 장례지도과, 제5항 AI소프트웨어학과, 뷰티케어과, 바이오의약과, 경찰과학수사학과는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학 기구표

